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의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낚시어선업자”라 한다)와 선원 및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영업시간) ① 어선검사증서에 “야간항해가 금지됨”으로 표시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

②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22:00까지로 한다.

제4조 (영업구역의 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호구역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무인도서 및 갯바위(간출암 포함)등으로부터 50m이내 해역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자가 야영할 수 있는 지정된 도서에 낚시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① 낙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업자는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낙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낙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선주·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 하여야 한다.
5. 낙시어선업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낙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시장소(수역·육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8. 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9.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10.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 금지 체장(체중)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취사,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6. 승객을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7. 승객은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 전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무안군 고시 제2013-59호, 2013. 7. 3)은 폐지한다.

[별표]

납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납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납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납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방법의 예시

승객 준수사항

1.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3.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취사,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5.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6. 승객을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